



#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경유)

제목 2016년도 배출량 인증결과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2016년도 배출량 인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동 사항에 대한 시설별 세부내역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시스템, <http://master.gir.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2016년도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법 제38조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NGM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통보(관장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배출권 이월·차입·제출(이의신청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배출량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시설 등)이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과 관련 있는 경우,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주시고, 미신청시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경우는 배출량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7.6.12.까지)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배출권 등록부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출권 제출을 위해서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배출권거래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배출권등록부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고로, 2016년도 배출량 인증결과(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지원 사무국(tel : 031-896-80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사무관

백순란

온실가스감축 전결 2017. 5. 31.

팀장

강경택

협조자

시행 에너지신산업정책과-1089 (2017. 5. 31.)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376 팩스번호 044-203-4769 / [bsl87@motie.go.kr](mailto:bsl87@motie.go.kr) / 비공개(7)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